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9.)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137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15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금)

2. 제출사유

마포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출연의 필요성(사업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마포구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 출연금: 10억원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5.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제3항¹⁾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목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들의 운영자금 융자시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결정하고 대위 변제 충당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됨.
- 마포구 출연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26억원이며 2020년도에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막대한 영업피해에 따른 운영자금의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에 기인하며, 2023년도 출연금으로 제출된 10억 원 역시 동일한 사유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20년	합계
2	2	2	2	2	16	26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출연(안)은 법령에 명시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의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연에 따른 특별보증의 대상, 보증 조건 및 지원우대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부서 설명을 요한다 할 것임.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